

##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연식제한 자제 및 지도·감독 요청

- 1.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구조·규격,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법정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장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 운행을 금지(`22.8.4.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그러나 최근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건설사에서 연식을 제한함에 따라 하도급사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식제한을 금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한 장비에 대한 연식제한 자제를 요청하니 건설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연식 제한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 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안전관 리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결 2022. 3. 8. 건설산업과장 **우정훈** 주무관 공업사무관 박문신 전혜빈

현조자

시행 건설산업과-1912 (2022. 3. 8.)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http://www.molit.go.kr 우 30103

전화번호 044-201-3537 팩스번호 044-201-5548 / qscqs1234@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